

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998. 9. 5.

총무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8년 7월 29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8년 8월 4일
- 다. 상정일자 : 제55회 임시회 제 4 차 위원회 ('98. 9. 5.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제안설명자 : 하수과장 조 병 현

가. 제안이유

하수도법시행령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과태료부과대상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. (안 제3조)
- 과태료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규정함. (안 제4조)
-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함. 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◦ 동조례안은 그동안 규칙으로 정하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으나 '97년 9월 5일 대통령령 제15473호로 개정된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보면,

○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목적, 과태료의 부과대상, 위반 행위의 조사·확인 및 청문에 관한 사항, 징수결정, 납입고지, 납입기한, 납입장소, 체납독촉, 이의신청, 이의가 제기된 경우 법원통보 등에 관한 내용 등이 규정되어야 하나, 안 제2조와 같이 부과대상을 하수도법의 적용규정만 정하는 것 보다는 부과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, 또한 과태료를 징수할 때에는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징수부에 등재하도록 총리령인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안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, 세입징수관사무처리 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내로 납입 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안 제5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는 등, 새로이 신설될 내용과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내용 및 자구정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. 특히 동 조례안에서 과태료의 금액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보면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, 과태료의 금액결정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기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(유남렬 위원) : 하수도 손괴시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지?
- 답변요지(조병현 하수과장) : 개정된 하수도법시행령에서 과태료부과징수절차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.
- 질의요지(김세창 위원) : 하수도법시행령이 '97. 9. 5 개정되었음에도 지금에서야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?
- 답변요지(조병현 하수과장) :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기간 등 제반절차에 필요한 시일이 소요됨.
- 질의요지(신봉현 위원) : 하수도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“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”라고 되어 있는데, 방금 하수과장 답변중에서 위 위반자에 대해서 20만원을 부과한다는 답변은 어느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?

- 답변요지 (조병현 하수과장) :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각구 과태료부과금액이 달라질 경우가 있어, 서울시 준칙으로 각구 공통 20만원을 부과토록 함.

5. 토론요지 : 수정(안) 가결할 것을 동의

6. 수정(안) 요지

가. 발의일자및 발의자 : '98. 9. 5. 김 세 창 위원회 1

나. 수정이유 : 과태료징수절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목적, 과태료의 부과대상, 위반행위의 조사·확인 및 청문에 관한 사항, 징수결정, 납입고지, 납입기한, 납입장소, 체납독촉, 이의신청, 이의가 제기된 경우 법원통보 등에 관한 내용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바, 일부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코자 함.

다. 수정골자

-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함. (안 제2조)
- 징수결정 조항을 신설 규정함. (안 제4조)
- 과태료 납입고지서 발행시 납입자의 주소, 성명과 기타 납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. (안 제5조)
- 납입기한 30일 이내를 15일 이내로 함. (안 제6조)

7. 심사결과 : 수 정 (안) 의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9. 기타사항 : 수 정 (안) 별첨

서울특별시 마포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(안) 에 대한 수정(안)

의안
번호

제안년월일 : '98. 9.
제안자 : 총무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과태료징수절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목적, 과태료의 부과대상, 위반 행위의 조사·확인 및 청문에 관한 사항, 징수결정, 납입고지, 납입기한, 납입장소, 체납특례, 이의신청, 이의가 제기된 경우 법원통보 등에 관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바, 일부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코자 함.

2. 주요수정골자

-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함. (안 제2조)
- 징수결정 조항을 신설·규정함. (안 제4조)
- 과태료 납입고지서 발행시 납입자의 주소, 성명과 기타 납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. (안 제5조)
- 납입기한 30일 이내를 15일 이내로 함. (안 제6조)

서울특별시 마포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(안) 에 대한 수정(안)

서울특별시 마포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(안) 중 다음과 같이
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부과대상)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다음과 같다.

1.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
공사를 시행한 자
2.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
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
3.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
4. 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지 아니한
자
5.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·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
6.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7.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
안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"남부대상자를 "남입대상자"로 "과태료 남부고지서
를 발부하여야 한다"를 "남입자의 주소, 성명, 남입금액, 남입장소, 회계연도, 회계구분
및 소관 세입과목과 기타 남입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과태료 남입고지서를 발
행하여야 한다"로 하여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징수결정)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이를
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징수부에 등재하여야 한다.

안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남입기한)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한
날로부터 15일내로 남입기한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교통이 불편하거나 남입자가

납입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므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내로 정할 수 있다.

안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동조 제1항중 "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를 결정한 때에는" 을 "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"으로 하고 "수납부 (체납부)"를 "수납부"로 하여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독촉을 한 때에는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
안 제7조를 제8조로 한다.

안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동조 제2항중 "경우에는"을 "경우에는 지체없이"로 한다.

안 제9조 및 제10조를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(안)

수정안 대비표

원안	수정안
<p>제2조(부과대상)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태료로 한다.</p>	<p>제2조(부과대상)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·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등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(신설)	<p>제4조(징수결정)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정수결정하고 징수부에 등재하여야 한다.</p>

원 안	수 정 안
<u>제4조(과태료의 부과징수 등) 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납부대상자에게 위반 사실, 이의 방법, 이의기간 및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한 과태료 처분통지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</u>	<u>제5조(과태료의 부과징수 등) ① _____ 일 _____ 날입자의 주소, 성명, 날입금액, 날입장소, 회계연도,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과 기타 날입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과태료 날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.</u>
<u>제5조(납부기한)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처분통지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</u>	<u>제6조(납입기한)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날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납입기한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입자가 날입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므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내로 정할 수 있다.</u>
<u>제6조(수납부 등)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를 결정한 때에는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수납부(제납부)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</u> <u>(신설)</u>	<u>제7조(수납부 등)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 ②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독촉을 한 때에는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</u>
<u>제7조(체납독촉 등) (생략)</u>	<u>제8조(체납독촉 등) (원안 제7조와 같음)</u>
<u>제8조(이의제기 및 법원예의 통보)</u> ① (생략)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	<u>제9조(이의제기 및 법원예의 통보) (원안 제8조와 같음)</u> ① (원안 제1항과 같음) ② _____ 경우에는 자체없이 _____
<u>제9조(생략)</u>	<u>제10조(원안 제9조와 같음)</u>
<u>제10조(생략)</u>	<u>제11조(원안 제10조와 같음)</u>

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(안)

의안 번호	201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7.

제출자 :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과태료부과대상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3조)
- 나. 과태료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4조)
- 다.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8조)

3. 관계법령

- 하수도법(1994.8.3. 법률 제4782호) 제42조
- 하수도법시행령(1997.9.5. 대통령령 제15,473호) 제24조

4. 참고사항

- 가. 예 산 : 필요없음.
- 나. 입법예고 : 1998.4.10.~1998.4.25(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 1998-119호)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(안)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하수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부과대상)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태료로 한다.

제3조 (위반행위의 조사 등) ①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제4조 (과태료의 부과징수 등) 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납부대상자에게 위반사실, 이의방법, 이의기간 및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한 과태료 처분통지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후, 납부의무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납부대상자의 주소불명 등 기타의 사유로 납부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하여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송부하고, 배달증명으로 송부한 납부고지서가 다시 반송된 때에는 이를 구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납부기한)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처분통지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

제6조(수납부 등)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를 결정한 때에는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수납부(체납부)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 (체납독촉등) ① 구청장은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거나,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(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)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과태료 납부 독촉장과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
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.

제8조 (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) ①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 할수 있다.
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 (준 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부과징수, 수납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세부과징수규칙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

제10조 (시행규칙)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